

제41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8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상정된 안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 2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 … 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 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 2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2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3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3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3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3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3
1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3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3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3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3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3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모두 136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그중 82건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제21대 국회와 비교하여 위원 수가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매달 두 번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기대합니다.

심사 방법을 간단히 알려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의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나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발언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10시02분)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훈** 심사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에 있는 심사자료가 최종본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용과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m 이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그 보호구역 내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청소년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는 건수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카지노업에 대해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제외되는 절대적인 금지행위로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장이나 경륜 경주장 등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는 행위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카지노업도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런 특정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하는 시설로 추가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 2건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가 열여덟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먼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카지노업을 절대금지행위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인 경마장이나 경주장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상대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두는 것에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민정 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필요하시지요?

말씀하세요.

○**고민정 위원** 아니, 그냥 필요한 것 같다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아, 필요한 것 같다고요.

○**고민정 위원** 어려운 법안들을 논의를 더 많이 하려면 쉬운 법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시지요. 그러면……

○**백승아 위원** 저 의견 하나 있는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말씀하세요.

○**백승아 위원** 제가 정선의 사북초등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그 앞에 근처에 카지노가 있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하는 법인데, 보면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장 경륜·경정 경주장 이런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회의를 해서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유사한 성격이라서 카지노는 무조건 안되고 이것들은 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카지노도 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

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통과를 시킬지 조금 고민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지금 정부 측 수정의견이 그렇게 하시자라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금 백승아 위원님 말씀같이 유사한 업종과 동일하게 상대금지행위구역, 상대금지시설로 규정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설명드렸고 전문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제가 의견 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은 합리적인 안도,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 상황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분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분들이시니까 이 안에서 결정하게 하는 수정안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정안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경마장이나 경주장 이런 게 사실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화·체육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이기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카지노만이 아니라 경마장 경주장도 교육환경 보호법 취지를 고려해서 그것도 오히려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상대금지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법은 하여튼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교육부에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해당되는 카지노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가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법인으로는 14개 법인이고 영업장으로는 18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미 다 조사를 하고 계셨네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경과조치도 좀 최소한으로 두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빨리 시행을……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경과조치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해당하는 곳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부칙에 대한 부분도 정부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계약학과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산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산업교육기관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 의뢰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라는 규정하고 그다음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했을 경우에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거꾸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지방대학 쪽에 설립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요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리면 ‘우선적으로’를 삭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 교육부안에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저도 사전 검토해 봤는데 교육부안이 ‘우선적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신영대 의원님이 올린 이 법률안은 굉장히 좋은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라고 하는 그것이 약간의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나 또 기업체하고 학교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좀 삭제해도 이 법안의 취지는 상당히 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우선적으로’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심은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할 수 있고 제도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지금 교육부안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뭔가 강제 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할 때 제한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법률적 근거를 두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고 이 경우에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인센티브는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법률안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신영대 의원안에 나와 있던 애초의 취지대로 다시 법률 개정안도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일차적 단계로 이 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한 근거가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신영대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의사일정 3항, 심사자료 2쪽입니다.

지방대학 계약학과 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려는 조항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이 법안이 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심사자료 2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적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율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율 10%를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완화하는 안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교원창업 기업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해당하여 투자액 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대학교 자본금 확보가 일반 기업에 비해 한계가 있는 점 등 일반적인 지주회사·벤처지주회사 등과 달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10%의 주식 보유비율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2. 실제로 자회사에 대한 외부투자로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율이 10%보다 낮아짐에 따라 자회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중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큰 투자액 회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중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에 지분을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서울대의 경우에 유망 AI스타트업에 1억 원 투자, 자회사 지분율을 지킬 수가 없어서 AI스타트업 지분을 모두 처분했고 이후 해당 자회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에 약 2300억 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3.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상호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했던 의무를 재량화하고 대신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안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현물 출자비율 유지 제외.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현물출자 요건과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분리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현물출자 요건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본 사항과 같이 동일한 사유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 산업교육진흥법은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취지를 반영하는 조세특례법이 23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지를 반영한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사실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교육진흥법에 반영이 되더라도 조세특례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조세특례법에서 이미 23년에 반영을 하는 바람에 이 법안의 개정 실익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4항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은 지금 산학협력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저희 정부 의견도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는데 토론 과정에서 지금 신영대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보류할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할 건지까지도 같이 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의원님 법안은 무척 너무 어렵더라고요.

○**김민전 위원** 어려워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이 법과 관련한 공부모임을 한 번 더 해서라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항, 4항을 함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법안이 좀 어려워서 제가 김대식 의원님 법안은 진하게 칠해 놨습니다, 좀 더 뒤로 연기하자고. 왜냐하면 공부가 좀 더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 법안은 뒤로 연기하면 좋을 것 같고.

신영대 의원님 법안은 정부 측과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다른 법안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계속해서 상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성국 위원** 동의합니다.

○**고민정 위원** 신영대 의원님하고는 상의해 보셨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를, 공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법안이 폐기되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던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동일한 취지니까.

○**고민정 위원** 그러면 발의하셨던 의원님 의견을 따라 주시는 게……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의 3번 안건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4번의 경우에는 전체회의 때 김대식 의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야…… 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군요.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아까 3번 법안은 어차피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팀들이 보좌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이미 조세특례법에 들어갔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폐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의원실에 확인을 해 가지고 폐기 의사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유보하고 다음 논의 때 하시지요.

○**고민정 위원** 예, 폐기 확인하시는 게……

○**소위원장 문정복** 예.

○**서지영 위원** 어쨌든 그 법안은 사실은 이미 진행되는 게 있고 하니까 또 입법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되게 유사한 형태의 다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 기억이 그런데요. 혹시 다른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적용되는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 사례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아마 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매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는 저희는 대학교육기관에서의 산학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모아 가지고 산학연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와 유사한 제도는 중소기업 촉진법이라든지 다른 유사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각 제도마다 각기 다른 제도로, 규정이나 각기 다른 범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제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나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지분율을 낮춰 가지고 회사들이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위기를 막자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분율이 거의 없고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찾아서 위원님께, 우리가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재논의할 때 굉장히 유사 사례들이 있고 지분율을 낮춘 사례들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훨씬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의원실로 제공해 주시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규정들, 개정되는 규정들은 실제로 산학연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요구되었던 그런 제도개선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김대식 의원님께서 그것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별 영역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관련 자료까지 포함해서 추가설명 자료를 의원실에 보내 드리도록 그리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4번 이 법안이 제일 관심 있고 뜨거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서지영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대학에 있어 봐서 말씀을 드리기로는 대학이 있고 산학협력단이 있고 그 밑에 기술지주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의 위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것 같아요.

심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서울대와 연대 사례가 들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 된 케이스거든요. 그 회사가 자회사로서 잘 되었을 때 산단이 10%, 그러니까 산단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30%까지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서 10%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회사의 10%까지를 채우지 못했을 때, 왜냐하면 그 회사가 커지게 되면 자산이 많아지고 볼륨이 커지는데 10%까지도 의무 보유를 하지 못했을 때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그것을 팔아 버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서울대·연대 같은 케이스는 잘 되니까 그런 건데요 오히려 지방대는 사실 그렇게 케이스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게 막 커지거나 잘 운영되거나 그런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지영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어떤 걸 여쭙고 싶느냐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규제도 완화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일 텐데 이것이 얼마나 보편성이 있는 것인가, 서울대·연대 외에도 대학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많은 대학들이 얼마나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건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산학협력단이 있고요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사업화하고 그걸 통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술지주회사를 만들고 기술지주회사는 다시 구체적으로 그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자회사를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에서 지분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립 시에 지분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라는 법령으로 지금 현재 초기 법령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자회사가 커지고 그다음에 기술지주회사가 역할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가 추가 출자를 하지 아니하면 인가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증여세의 증여 대상이 되든지 하는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큰 지금 현재 제도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이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10%의 규제가 없이 그냥 출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10%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설립 시에는 필요한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팔거나 아니면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따로 법안 심의를 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앞의 것도 몇 개 그런데 여기에 정부 의견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은 저희가 이 안들은 실무적으로 논의가 됐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원래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던 김대식 의원님이 법안을 마련하시는 과정에 저희 의견을 같이 드려 가지고 그런 문제되던 부분들을……

○**고민정 위원** 원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제도를…… 그러니까 원래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법안 발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자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법안의 취지들이 반영이 되어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원안에 동의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정부 의견이 다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민정 위원** 예.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는 전문위원님…… 저희는 제출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워낙 바쁜 시간에 운영이 되어서……

○**고민정 위원** 아, 그런 거구나. 그것 반영을 해서 주셔야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거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은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소위원장 문정복** 동일하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은 동일한 의견입니다. 의견 없는 것 아닙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자회사 의결권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로 완화한 게 4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4년 만에 또 이것을 아예 10%도 없애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상법상 100분의 10 이상 지분 보유하지 못하면 대학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런 영향력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회사 세우는 데 도움만 주고 기술력을 뺏기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료 더 보충해 주시면 좀 더 논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것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토론 다 끝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 중 두 곳 이상을 선정해서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후에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현재는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검진(0~5세)과 성년 검진을 그리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서 건강검진 체계를 건강보험공단이 학생들 건강검진을 주관할 경우에는 학교의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성인 건강검진 등과 연계되어서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가지고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학생들이 성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검진기관 방문 검진으로 하게 되면 부모의 무관심 등의 사유로 학생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 법이 실효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김예지 의원이 같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같이 개정되어야지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의견은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지금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예산 지원액을 건강검진 사업 예산으로 활용 중이나 이 검진사업 지출액이 예산 지원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연간 400~500억에 달하는 이런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 기존 교육부·교육청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이관을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심사를 하는데 김예지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보건복지위에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법률이……

○**전문위원 강대훈** 같이 가야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것과 같이 통과되어야 돼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속도 조절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훈** 속도 조절이 우리 게 먼저 가고 와도 되고, 그런데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게 먼저 가도 국민건강보험법이 같이 와서 같이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시범실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적 변화입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5항에 학교 건강검진을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진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령으로 건강검진 규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교육부령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건강검사 업무 전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해서 학생 건강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1대 때도 이 법안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관련된 법안이. 그때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위탁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요건을 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3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따라서 이렇게 건강검진하게 되면 학생이 직접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백승아 위원님, 구강검진은 병원에 아이들이 직접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백승아 위원 예, 치과 가서 받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구강검진 안 하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 계속 체크하고 전화해 가지고, 고통 많이 겪었잖아요?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드려요.

○정성국 위원 공감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구강검진을 병원에 맡겼더니 검사받으러 갔던 아이가 검사를 안 하러 가서 선생님이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게 선생님들도 너무 스트레스인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구강검진을 넘어서서 건강검진을 맡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정말 관심 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에게 맡기면 1학년 선생님들은 아마 매일마다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 건강검진 갔다 왔니?’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간다 했는데 지금 바빠서 못 간다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강검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아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정의견에 그것 나와 있지요?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겠다’ 이렇게 수정안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강대훈 법안 수정안은 아니고 정부 조치를……

○교육부차관 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말씀 중에서 재원과 관련된 복지부의 의견이 있는데 이 재원은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강검진을 공단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보험공단 원래의 사무가 이런 사무로 법제화한다 그러면 그 사무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업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국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사항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공단에서 진행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은 일반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원래 학교의 책임인데 그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방향이지만 지금은 공단이 책임을지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주체가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정한 시기에 즉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받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저희가 그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이 법안 취지는 근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주자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백승아 위원님이나 정성국 위원님이나 학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로서의 경험을 보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선생님들 대신에 공단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는 아이들도 그러면 공단에서 연락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교사분들이 이제 그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과연 적용될 거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정성국 위원님이나 백승아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관님 보실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게 저희가……

○**김준혁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엄청 좋은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사실 저도 두 분 위원님과, 보는 순간 딱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늘봄·돌봄으로 가는 것은, 전일제로 간다라고 하면 학교가 그만큼 많이 돌본다는 얘기인데 학교에 있을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 학생이 혹시라도 가정 학대를 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가족에 맡겨 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 의견으로 이관을 했을 때의 강점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아직도 보완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우선 이관했을 때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이것을 진행하면서 되는 학교에서의 책임을 공단으로 넘기고 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결과가 관리되고 거기에 따라 건강이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되는 큰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지금까지 저희가 일종의 위탁 방식으로 구강검진을 실행했을 때는 여전히 학교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가정이 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인데 이제 이 일은 사무의 책임 자체가 공단으로 가게 되어 있는 체계로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김민전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에 우리가 돌봄을 운영할 때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을 맡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돌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를 늘봄을 하면서 변화시킨 것은 담임선생님이 책임지지 아니하시도록 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분을 명시적으로 맡겨서 그분이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 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제도가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마땅히 공단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이 없어지고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일인데 그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준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 서지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서지영 위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고 또 그것은 개인의 성장과 생로병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을 공단이 가지고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차관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공단으로 넘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공단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책임을 학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영유아나 유·초등학생들, 18세면 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하는 건데 이 건강검진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저도 잘 안 데리고 갑니다. 선생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도 구강검진 제때 못 데리고 가서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당장 이렇게 될 때는 학부모들이 제때제때 그 기간 안에 챙겨서 건강검진 기간에 방문하여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수행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선생님들한테 많은 부분을 부담을 드렸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상당 부분 감당하시다 보니 굉장히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고 교육의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과 케어까지 담당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이제는 공단과 학부모한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서 교육부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검진기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부모님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일자를 검진일로 지정해서 건강검진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은 법률안에 담길 수 없지만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상당 부분 검진 누락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공단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사실? 공단이 학부모들한테 연락하겠습니까, 학생들한테 연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공단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육위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건강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거의 다 안 할 겁니다. 고등학생은 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률안과 별도로 아이디어를 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수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교육부령으로 하시는 것은 어쨌든 공단에서 실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교육부에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육부에서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검진 누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과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시만요. 지금 발언 순서가 김준혁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이렇게 되십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도 굉장히 좋고 정부 측 안도 좋고 전문위원님 안도 정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실 병합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합되지 않고서는 이 법안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선후차나 같이 가거나 여러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이 법안은 병합으로 해서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지금 여기서 이런 논의들을 반영한 내용 속에서 계속 더 병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시간상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 동의하고요.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같이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책임을 넘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실시 책임입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수검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게 가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체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학교에서 담보해 줄 것인가, 교육부에 담보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우선은 저희가 책임을 넘긴다 할 때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서지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진 결과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공단에서의 관리체계하고 동시에 학교장에게 통보해서 학교장이 건강검진과 관련돼 있는 정보는 보유하도록 하는 현재의 체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라 그걸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원주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거의 95% 이상이 방학 중에 검진을 함으로써 그 기간 중에 사실상으로는 95% 이상이 검진을 완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검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별로 보내서 같이 통합으로, 이것은 건강검진 기관은 어디라도 가서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관련 사항은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서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공단과 협의해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논의하시는 대로 저희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한 후속적인 제도 보완 방안은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미수검하신 학생들을 다시 하는 대책을 학교로 다시 넘겨서 그분들에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실무적인, 앞으로의 운영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건강검진이 끝난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해서 기록을 하고 NEIS에서 관리하는 상황이고요. 운영과 관련돼서는 학교하고, 공단하고 지역공단이 있으니까요 협의해 가지고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학교별 미수검자 미검진자를 명단을 줘 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그건 소수일 테니까요. 소수의 경우에 종전에 하던

것처럼 학교에서 같이 가 가지고 검진하는 방법 등의 실용적인 방법들은 저희가 검토해 나갈 사항들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비슷한 말인데요. 이게 학생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서 저는 이 법이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검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건 실행하면서 협의해 가야 된다 하시는데, 그러면 다 학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으로 보면 학교장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누가 관리할지 논의를, 최종적으로 관리할 곳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부면 교육부, 학교장이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떠밀어서 너네가 다 관리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관리 주체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저는 이게 아이의 건강권 측면보다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 5%가 누락된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사실 필요한 건데 그 5%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각자 개인적으로 엄마랑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제로 뭐 하는 것 있잖아요. 옛날에는 신체검사 이런 것 하루 날 잡고 죽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한 반이 통째로 아니면 한 학교가 통째로 반드시 그 날은 건강검진을 다 받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자율로 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은 거의 학교별로 인근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공단에서 시행을하게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병원을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검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됩니다.

○**김민진 위원** 지금 직장보험의 경우에도 사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명단을 직장에 계속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받는 사람은 1인당 10만 원씩인가 직장에서 벌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물론 문자도 개별적으로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아마 학교가 상당히 괴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은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학교로 다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를 보내도 이것 주기별로 다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돌봄을 강화한다는 게 결국 일하는 엄마들의 일거리를 상당히 덜어 주려

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아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가정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위원님까지, 정성국 위원님도 토론하시겠어요?

○**정성국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까지만 토론하고 이 법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큰 틀에서 볼 때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학생으로서는 그러한 건강을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권리 행사를 더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건·질병학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이 나이대 아이들이 빠져서 국가 보건관리에 구멍이 생기니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측면입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의 건강권리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간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제가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철학적 접근이, 지금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게 여기 읽어 보니까 ‘학생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준다 이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권리를 주겠다는 거지요, 아이들에게? 그 권리 행사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는 그 의미에서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 권리를 지금 현재 아동의 건강권의 관점에서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건강에 대한 또 본인의 선택권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본인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이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도의 변화 과정에 저희가 선호하는 안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교육적으로 볼 때 적합하다고 보면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보는 과정인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그 측면이라 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건강에 관한 것은 국가가 교육의 한 부분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게……

○조정훈 위원 우리 헌법에 건강권이 있으니까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의 건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게 조기 발견이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이다, 여기까지는 논리가 깔끔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발의가 필요한 게, 제가 발의의 배경을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5% 아이들이 건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여러 이유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제도가 만약에 바뀌면 이 5% 아이들의 사각지대가 해소가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원래 이 법안 발의의 취지는……

○조정훈 위원 안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각지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신 거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발의 배경은 저희가 다 동감이 되는데 수단적으로 이게 과연 발의 배경, 목적을 충족하느냐. 현실적으로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물론 부모님의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면 사각지대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께서 여러 이유로, 특히 영유아들은 부모가 없이는 못 갈 텐데 이 비율이 더 늘어난다면 발의하는 목적의 정반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우려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교사분들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이건 알겠지만 정책의 목적을 굳이, 상하위를 내다 보면 이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의 행사가 더 중요한 개념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잖아요, 지금.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아직 구멍들을 다 메꾸지 못한 것 같은데요, 법으로 통과되기에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이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반영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건강검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니 건강검진과 관련 활동을 전문기관인 공단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도 생애주기별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게 발의의 원래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취지는 동의하는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슈가 생기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아동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틀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려 공감됩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도……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검진을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생애주기별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성국 위원** 저도 한 말씀……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니, 공단에 저희가 이 아이들의 건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위원님 토론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요. ‘다만’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돼 버린 경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3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함에 따라서 학교의 행정업무가 감소함은 물론, 학생 건강검진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들이 구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5%인데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금도 사각지대는 계속 있습니다. 학교라는 현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5%를 너무 겁내기보다는 일단은, 그리고 보건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보건선생님들이 코로나 때는 방역까지 했고 또 환경 정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을 치료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보건선생님들이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많이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5%의 사각지대에 겁을 내기보다는, 지금도 벌써 사각지대는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학교의 행정업무 개선을 확실히 시켜 주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학교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의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해 줌으로 인해서 신뢰를 높이고 다만 학부모가 데리고 가서 학생을 건강검진시키는, 방학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인 안내나 어떤 그런 조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줌으로 인해서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서 저는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부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김선교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육아휴학 신청 대상자녀 연령·학령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이에 더해 대상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부칙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와 관련하여 그 소급 적용 규정의 범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부칙의 적용으로 인해 과거 학적 수정으로 인한 학사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에서 제2조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직역과의 충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부칙에 있어서는 과거까지 적용하는 것은 학칙의 운영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학적 혼란이 있어서 부칙은 삭제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실 건데요. 의견 주신 부칙까지 함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견 없습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한 가지, 육아휴직 이게 어른들 휴직하는 겁니까? 휴학이 뭐예요, 지금?

○**고민정 위원** 대학생, 대학원생 뭐 이런……

○**조정훈 위원** 대학생, 대학원생이 학부모가 됐을 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인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준혁 위원** 제 친구도 1학년 때 애 낳았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이게 저출생 문제하고 상당히 잇닿아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것은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한정애 의원님, 이제 이것이 병합심사가 되면 한정애 의원님이 좀 더 포괄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맞을 텐데요. 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대학의 혼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혼란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면 소급 적용을 적극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란이 왔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테면 얼마나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교육부차관 오석환** 오히려 거꾸로 보면 대상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효율을 발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몇 분의 대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개인

신상까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적 변동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절차는 모든 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꼭 관료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포 즉시 발효하더라도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법안을 낸 것 자체는 굉장히 애정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생각 못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제 친구 대학 1학년 때 아이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런 경우 휴학할 생각보다 어떻게 돈 벌 생각을 더 많이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의 가능성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정말 제가 이런 법안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부 의견안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동의하고 한 가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정부안의 1조 안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2조 안, 사실 이런 경우가 아까 차관님께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행정에서 학사행정에 혼란을 주는 안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보직 맡아서 일을 했을 때,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대상자들을 좀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교육에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의견안 1조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2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 법안이……

○**소위원장 문정복** 부칙을 못 받아들이신다고요?

○**김준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되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는 한정애 의원님 안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소급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저출생 시대에 휴학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건데 소급 적용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학교에 그냥 휴학 처리하면 되는데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소급 적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 소급 적용 법안은 김선교 의원 법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둘 다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데 이 소급 적용 부분을 정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의견을 좀 바꾸실 생각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 끝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기왕에 이러한 효과를 전체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좀 검토했던 것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급효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일반휴학했던 학생들을 다시 육아휴학으로 바꾸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학교가 감내하는 그 정도의 사회적인 공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12항에서 15항까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교육법 하고 있으니 이 12항부터 15항까지를 끌어올려서 같이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12항에서 15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대학생 급식 지원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대학생의 복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각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목적과 방법 등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공통적으로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율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율호 의원안 필요 예산 추산액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335개 대학 중 186개교에 대해 총 450만 명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1안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 식수 증가하는 경우에는 324억, 2안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 식수를 유지할 경우에는 243억, 추가로 인건비 관련 135억 원을 하고 있으며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차적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고민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영양·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대학생 급식으로 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급식시설·설비 등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모두 지원수단, 방법,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에 보시면 각 개정안 비교표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식비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높은 성과

가 드러나고 있으나 상당수의 대학은 행·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24년 식수 및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지자체와 교육부의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사업 집행 가능하게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및 식습관 개선, 나아가 학업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는 경우 국가재정에 상당한 예산 부담, 연간 약 6000억 원이 들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강행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지원 가능하여 개정의 법 실익이 낮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쪽에는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4쪽 보시면 부칙에 시행일이 있으며 정을호·김기현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고민정·이해식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간에 입장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출발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많이 남아도는 쌀을 소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상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 저희 교육부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우리 청년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되게 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체계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고 법률 근거를 먼저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정부 내에서 그때 나온 어려운 합의를 그런대로 저희가 설득해 갔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 지금 일반 사업으로 진행돼 있어서 계속 변동이 많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의 사업을 통해서 확장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생을 위한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들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그런 기관 간의 반대를 다시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계속 설득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여기 제안하신 의원님들도 아마 청년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부분의 개념, 미래에 투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에도 우선 동의하고요.

수석님, 아까 보니까 임의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정을호 위원** 그런데 고등교육법 8조에 보시면 별도의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포 후 6개월 3개월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시행에서 하는 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위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시를 들자면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에는 법제실의 기준에 따르면 통상 부칙 시행일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적으로는 그렇고요.

○**정을호 위원** 그런데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린 건데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그것은 하면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공통으로 공약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닌 상황에서 재량권으로 하면 너무 이 부분이 혼들릴 수 있어서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의 공통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신 추계 보니까 6000억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하면, 저희도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학교별 하루 평균 147식을 제공한다는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평균 160일, 한 달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갑자기, 모든 대학교에서 현재 50끼니를 늘려도 하루 200끼니거든요. 200끼니인데 갑자기 200만 명이 다 먹는다는 전제로 해서 6000억을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 할 건 없이 좀 다르다 너무 이것이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사항들은 지금과 같은 사업 형식이 아니고 만약에 전체를 한다고 그랬을 때의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풀리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저희가 제안한 방식으로 일단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께 질문드린

것같이 하위 규정이 없이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 후에 즉시 시행도 가능한 차원입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 학생들에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지금 천원의 아침밥을 하는 학교들을 보면 인력 문제 때문에 유지를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력도 돈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인력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넣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보면 사정이 어려운 지방대학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정을호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정부의 의견은 아닌 거고?

○정을호 위원 예.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논의는 사실 사업을 대학생에 대한 아침밥 식사 지원과 건강관리에 대한 차원으로 완전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면 이 근거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반이 됩니다.

○고민정 위원 했다가 안 될까 봐 그러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너무너무 좋은 법이고 저도 학교에 있어 봤지만 학생들이 진짜 거의 다 아침 깊고 오거든요. 너무 따뜻한 법이기는 한데 정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것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보면 학생은 1000원을 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한 1000원 내지 2000원을 재정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내고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동창회나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내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고 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일식에 대한 지원금이 3000원에서 5000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운영하는 것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실 우리 학교도 하다가 나중에 멈췄거든요. 고민정 위원님 말씀이 되게 정확한 지적이셔서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쌀 소비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데 식자재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수업료가 무상이

아닌데 급식은 무상으로 가는 거라 약간 그런 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셔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 때문에 반대 의견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해서 이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운영 상황에서는 다양한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실제 가서 아침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는데, 저희도 정부 부처에서는 이 정도 법률적 근거라면 동의해 주겠다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11페이지를 보시면 신설 조항이 있어요. 정을호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이 넷 중에서 어느 의원안을 중점적으로 하고 갈 것인지 의견과 아니면 이 네 가지 의견을 정부가 정리해서 대안으로 주시면 그 안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정리한 안을 먼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실래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조정훈 위원** 대안은 지금은 없고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 **조정훈 위원** 배포해 주시지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훈 위원** 배포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 **소위원장 문정복** 예, 하시지요.

○ **조정훈 위원**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약간 영뚱한 데가 있어서.

대학 진학률이 몇 퍼센트지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은 70% 초반입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나이대 나머지 30%는 대학 안 다니지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수혜를 못 받네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 이슈도 있습니다.

○ **조정훈 위원** 대학 안 간 것도 서러운데 대학생만 밥 줍니까?

○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이슈가 있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억울

하면 대학 가라?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래서 저희가 강제화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도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입장에서 이 나이대 청년들, 대학생 나이의 30%는 뭐하고 있으리라 짐작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30%가 취업 군대 또는 거의 45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는……

○**조정훈 위원** 재수생이나 뭐 이렇겠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취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시 천원의 아침밥을 지지하면서 과연 우리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할 때 5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생에게 예산 지원이 먼저일까, 아니면 대학 갈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사회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게 먼저일까라는 질문은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은 자체가 감당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랑 자체 예산하고 해서 그런 청년들은 거기 와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게 좋겠지요.

○**조정훈 위원** 대학이라도 가니까 그래도 학교라도 오니까 아침 먹는 건데 그냥 집에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고민정 위원** 학교에서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조정훈 위원** 그런데 대학 안 간 친구가 대학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걸요.

○**고민정 위원** 못 들어가려나.

○**정을호 위원** 아까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청년소득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조정훈 위원** 거기로 가지 마세요. 거기로 가지 말고……

(웃음소리)

○**정을호 위원**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조정훈 위원님 안을 들어 보니까 기본사회주의자시네요.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것을 할 거면……

○**백승아 위원** 이리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김기현 의원님이 먼저 냈다는 사실……

○**김준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원의 아침밥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다 와서 아침을 먹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해 보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따뜻한 밥 먹고 저희도 가서 먹고 좋은데 사실 열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부도 또

지자체도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정을호 위원님께서 ‘예산 부담금이 6000억이다 이것은 과도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차관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점은 서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약간 부풀리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교육부 쪽에서도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야지 여기가,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부 안을 배척하거나 교육부를 반대하거나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자고 서로 함께 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합리적인 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차관님, 현실적인 건데요 한 가지만. 어저께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있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증액이라든가……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실 그래서 지금 조정훈 간사님도 말씀 주시고 또 김준혁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강경숙 위원님도 우려의 부분도 말씀 주시고, 사실 보면 이것을 운영할 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농식품부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제1번입니다. 원래 주축이 거기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출발하게 되면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학교에서 대학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재정지원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풀어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문안을 정리해 가지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자라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입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예결위하고 예산 당국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서지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정책 자체가 굉장히 히트 상품이기는 합니다. 히트 상품이기는 하고, 처음에 농식품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대학가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서 역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단계까지 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아침밥이 천원의 아침밥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원의 점심밥, 천원의 저녁밥, 그리고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대학을 다니지 않는 30%의 청년들에게 그러면 또 지역 식당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재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 모두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원의 아침밥을 처음에는 쌀 소비 촉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지요. 사실은 이벤트지요. 이벤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한정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학교에서 100인분에서 150인분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가서 못 먹고 돌아오

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뜻한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감성적인 언어로 우리가 과연 접근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한번 우리 모두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학을 다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의 이벤트로 시작했던 이 정책이 정말 따뜻한 메시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지만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는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도 농식품부에서 사실 한 30%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율 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지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따뜻한 정책적 메시지를 줬던 것에 대해서는 100% 200% 공감하지만 저희의 의사결정이 논의 과정이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고려하여 재정의 우선순위에 과연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도 디테일한 정책을 준비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강경숙 위원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차관께서 12시에 딥페이크 문제로 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강경숙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요, 저도 아까 그 부분의 지속성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아까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하셨고 지속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작도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법이 일단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빨리 실행이 돼서 정말 학생들이 아침밥도 거의 안 먹고, 진짜 1000원 가지고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건강도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저도 사실 공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토론 종결하고요.

정부에서 내온 대안 다 받아 보셨지요?

그래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에는 ‘즉각 시행’으로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민정 위원 정부안에는 ‘예산 확보’만 쓰여 있는데요. ‘인력 및’이라고……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한테 간 게 먼저 나온 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에는 ‘즉시 시행’ 이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과 7항, 12항부터 15항까지 6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정리 안 된 내용이 있는데 아까 6항과 7항에서 시행일과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6항·7항은 한정애 의원안으로 하고 대안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반대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상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권장·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생자치기구가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고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개정안을 통해서 지역별 지원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으로 ‘필요한 여건을 조성’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자구 수정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관계 기관,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등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문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문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불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출했는데 저는 굉장히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학생자치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이미 초·중등교육법이나 그 시행령에도 여러 가지 학칙으로 정하는 부분 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 권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은 또 학교장의 지원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굳이 법령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까 법안에 보면 ‘필요한 여건을 조성’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쓰셨네요.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장의 혼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아, 교육청의 의견 참고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필요한 여건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조성하라는 건지,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교육부에서 굉장히 독려하고 교육청에서 독려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과잉 입법으로 생각되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위원님.

○ 정성국 위원 저도 서지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의견을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 딱 2개를 보면, 우리가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 말은, 저도 학교에서 했지만 자치활동이 잘되고 있는 거라 봅니다. 자치활동 잘되고 있고, 학교장 중심의 경영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한 자제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학교장의 자율 경영을 인정해 주고, 학교 소속 교원들 간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교육청에서 자꾸 하나하나씩 개입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복이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의미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 고민정 위원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훨씬 더 강화되게 권고하기 위해서 법안들이 필요한 거겠지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말하지 않아도 기본 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지만 헌법에까지 인권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에도 보면 자치활동이 실제로 잘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수치로 나오네요. 독립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무려 절반이나 됩니다. 그리고 입후보 조건에서 교장의 승인 같은 이런 자격 제한을 두는 학교도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즉 모든 학교 중에 절반가량의 학생들은 자치활동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법이 없이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처럼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일 테지만 이것이 생긴다고 해서 학생들에 혹은 학교장에게 큰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선언적인 의미가 훨씬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김준혁 위원** 예. 제 의견이 계속 심사, 다음에 좀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조정훈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니, 왜 자꾸 간사끼리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 정말 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정훈 안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학교안전 공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있으며 문정복 안의 경우에는 학교안전법 전체를 적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되어 학교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 의무 가입과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임의 가입은 의무 가입 여부를 비롯하여 공제료, 피공제자 범위,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21년 9월 시행 중인 공제중앙회의 사업에 대학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규정하여 대학이 선택적으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각종 의무를 적용하는 경우 분쟁 발생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서 안전조치 관련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경기·제주는 취지에 공감하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제12조의 단서 외국인학교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세종의 경우 청소년활동안전공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문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는 학교안전 관련 책무의 적용 가능성 및 실태 파악의 어려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전 관련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제안해 주신 법률안의 경우에는 학교안전법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21 대에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아직 등록도 지금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안착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책임과 자율성을 동시에 누리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논의하지 못 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재정 지원의 가능성들도 법안으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법안 취지를 반영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있습니다만 재정 지원을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 일반적인 재정 논의인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하고 달리 학교가 아닌데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 이쪽 학교안전법에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 체계하고 큰 차이들이 생깁니다. 우선 학교라고 규정을 할 때는 학교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시설 안전과 관련돼 있는 교육시설법 등의 다양한 법령을 동시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도 당연히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분간사님께 어떤 방법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먼저 하세요.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계속 제 중심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준수한다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명제를 해석해 본다면 그 학생이 공립학교에 있든 사립학교에 있든, 학력 인정 대안학교에 있든 학력 미인정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보든 우리 국가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건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는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공립이냐 사립이냐,

대안학교냐 대안교육기관이냐에 따라 우리 국가의 지원과 보호는 매우 다른 수준입니다. 이것은 저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위에 있으면서 그 격차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소견이 아니라 헌법 정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 학생들이 교육받으면서, 지금 저희가 문정복 간사님과 발의한 내용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망을 제공해 주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교육권의 하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되면 교육법상의 학교라는 틀이 너무 크게 확대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행간을 읽어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면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과 관련된 다른 모든 법에……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초·중등교육법과……

○**조정훈 위원** 여기 보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과 함께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대안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것을 오늘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셔서 차관님이 어떤 대안을 고민하시는지에 대한 논의는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써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 이것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검정고시라는 제도도 국가가 인정한 제도고, 그러면 검정고시라는 게 있다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든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든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든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놓자라는 취지는 교육부에서도 공감한다고 믿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여러 가지 실무적 무리가 있다고 하시니 또 대안 법안이 있으면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질문이에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차이가 학력 인정 미인정 이게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가장 큰 차이는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이고 동시에 공교육 체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들은 굳이 학력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학력 인정의 바깥 체계에서 다양한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했고, 종전까지만 해도 이 기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도 안 된 상태에서 완전히 외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교육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을 마련해 주셔서 이제 관련된 체계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대안교육기관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 등록이라는 절차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등록까지 오면 조금은 더 공교육 체계하고 가까워지는데 거기까지도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안 온 상태에서 아직……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격이 부족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교육부차관 오석환** 기관의 특성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자격 요건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등등의 자율성 밖에서 있겠다는 자율성의 의지도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에서 부합되기 어려운 측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쨌든 교육을 하는 곳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대안교육기관도.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법을 만들어서 점점 더 공교육과 관련된 영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지금 말씀은 이미 다 하셔서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체계상으로 대안기관 입법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조금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정말 너무 감동이고 다 공감이 됩니다.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에 각종학교의 인정을 받는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21대 박찬대 의원님이 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논의하는 것은 21대 발의된 거기의 대안교육기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활동안전공제로 운영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있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걸로 커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이렇게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학생들하고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만 조금 짚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활동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금의 경우에는 두 텁개 더 보호가 됩니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보상 금액이 더 많은데 여기는 선택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기관이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두 분 간사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내용들은 이거를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거

기예 따라서 추가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까지 연계되는 것을 기대하고 법안을 발의하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 단체들도 만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56% 정도가 청소년 그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지금 차관님 주신 자료, 배포된 자료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의무가입이 훨씬 더 촘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 쪽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한번……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현재 청소년안전공제회에는 임의 가입이고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다 가입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두 분 간사님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할 경우에는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정부 측도 공감한다, 그리고 21대 때 통과되었던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해서 대안교육기관도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교육부가 이렇게 연락을 받고 등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 중인데 이 법안이 지금 바로 통과가 되게 되면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도 있고 아직 그게 다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공제회에 가입시키기도 어렵고 혹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등록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등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안교육기관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보고, 그분들도 어쨌든 교육부 인정 받아서 뭔가 예산 지원을 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 법안은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걸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안을, 역할을 좀 하시고 그리고 공제회에다가도 같이 빨리 가입하게 하는 조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큰 사고가 나서 공제회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민간인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 그 건 때문에 부모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후원금 거둔 것 때문에 공제회는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옥신각실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안은 제가 합리적으로 나중에 법률 개정을 할 생각인데.

지금 차관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발언으로 토론을 종료할게요.

○**강경숙 위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께서 이석을 하셔야 돼서. 서지영 위원님, 조금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지영 위원** 예.

○**강경숙 위원** 이 대안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가 아닌데 학교안전법에서만 학교로 정의하는 것 이런 거는 법체계상 문제는 있어요. 그런 것들 살필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9항과 10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정리를 할 거고요.

폐회하기 전에 의견이 들어왔어요. 기조실장님께서 회의에 집중을 안 하신다고, 차관님만 열심히 하신다고. 저한테 꼭 회의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들어왔고요.

차관님, 이제 회의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오늘 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소위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찌 됐든 부처와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꼭 잘해 주실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장님 거는 유보로……

○**소위원장 문정복** 이거는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김대식 의원안 이야기하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 향후 법안소위 심사를 할 때 개최 2주 전에 안건을 확정해 주시고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맨날 그런 불평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돼.
(웃음소리)

○**소위원장 문정복** 오늘 첫 회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교육위 법안소위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좀 하고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민전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